

<p>제2020-168호 2020년 9월 4일(금)</p>	<p>시  보 여수시</p>	<p>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0-35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사항 고시 3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0-2213호 여수시 응천지구 종교용지(응천동 1857-5번지)매각 공고 4
- 여수시 공고 제2020-2214호 「수정동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간 모집공고 8
- 여수시 공고 제2020-2215호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18
- 여수시 공고 제2020-2217호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 22
- 여수시 공고 제2020-2218호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4
- 여수시 공고 제2020-2222호 도로지정공고[오천동 368-1번지] 34

기 타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0- 35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합니다.

허가번호 (변경일자)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용 면적(㎡)	점용·사용 목 적	허가받은 자		변경사항(허가기간)	
				주 소	성 명	변경전	변경후
2015-042 (2020.9.4.)	여수시 오천동 산 192-1번지 지선 공유수면	4.5㎡ (050)	해수운반용 인수관 설치	여수시 망양로 482-9(소호동)	김종명	2015.9.7. ~ 2020.9.6.	2020.9.7. ~ 2025.9.6.

2020. 9. 4.

여 수 시 장

여수시 응천지구 종교용지 매각공고

1. 매각대상 토지

(단위 : m², 원)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이용현황	공급예정가격	공급방법
여수시 응천동 1857-5번지	종교 용지	1,089	○ 보전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784,735,600	추첨

2. 신청자격 및 추첨일정

가. 신청자격

▶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단체

나. 공고기간 : 2020. 9. 4.(금) ~ 2020. 9. 17.(목)

다. 접수기간 및 추첨장소

1) 접수기간 : 2020. 9. 16.(수) ~ 9. 17.(목) 09:00 ~ 18:00

2) 추첨일시 : 2020. 9. 23.(수) 15:00

3) 계약체결 : 2020. 9. 28.(월) ~ 9. 29.(화)

4) 추첨 등록 및 추첨 장소 : 여수시 문수청사 회의실 3층

※ 문수청사 : 여수시 여문2로 124(문수동 640-2번지)

3. 매수 신청서 제출

가.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실수요자는 공급예정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신청서의 공급예정가격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상이한 금액으로 신청 시 무효 처리됩니다.

나. 추첨 당일 14:50까지 추첨 장소에 입실하여 추첨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신청예약금 납부 및 반환

가. 신청예약금은 추첨 당일 공급예정가격의 10%의 자기앞수표로 추첨 신청서와 함께 투입하여야 합니다.

나. 추첨 결과 탈락된 자에 대한 신청예약금은 추첨 후 즉시 반환합니다.

5. 신청예약금의 귀속

가.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나. 신청자격 부적격자, 허위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행위로 당첨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은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6. 당첨자 결정방법

가. 공급예정가격 금액과 동일 금액으로 추첨신청서의 신청 금액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상이한 금액으로 신청 시 무효처리됩니다.

나. 다수의 신청으로 경합 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며, 단독 신청의 경우는 별도의 추첨절차 없이 신청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첨자는 현장에서 발표하고 별도의 서면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7. 제출서류 등

가. 등록(접수)

1) 신분증 및 도장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용도 : 추첨위임용) 각 1부, 대리인 신분증

나. 계약체결

- 1) 종교단체 고유번호증(세무서 발행)
- 2) 종교단체의 대표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대표자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
- 3) 종교단체 직인(인감) 및 직인(인감)증명서
- 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등록증명서 1부
- 5) 대표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8. 매각대금의 납부 방법

가. 계약금 : 계약체결일에 10%납부(신청예약금을 계약금으로 대체)

나. 중도 1차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양대금의 20%납부

다. 중도 2차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양대금의 20%납부

라. 중도 3차 :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 이내 분양대금의 20%납부

마. 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분양대금의 30%납부

바.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기일의 다음일부터 납부일까지 지연원리금에 대하여 여수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등

가. 토지사용승낙 : 분양대금의 50%이상을 납부하고 잔금에 대하여 지급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서류용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합니다.

나. 소유권 이전 : 분양대금 완납 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계약체결 이후 자격요건 미비나 기타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점은 무효로 하며, 우리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시로 귀속됩니다.

- 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현장 확인, 재산목록, 공부서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추첨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등록을 필한 분은 재산의 제반사항을 확인·열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치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추첨 참여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 다. 계약재산이 매수자에 소유권 이전등기 되기 전에는 우리시의 승인 없이 전매 및 양여, 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계약재산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우리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시 신청예약금은 우리시에 귀속합니다.
- 라. 매각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공영개발과(☎ 061-659-4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9. 4.

여 수 시 장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우리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4일
여수시장

1. 공 고 명 :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수정동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여수육이이피에프브이주식회사

다. 시 공 자 : (주)케이씨씨건설

라. 감 리 자 :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1) 위 치 : 여수시 수정동 621번지 외 5필지

2) 대지면적 : 3,847㎡

3) 연 면 적 : 25,844.45㎡

4) 규 모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20층(1동)

5) 객 실 수 : 315실

6) 공사기간 : 2020. 9.~ 2022. 6. (22개월)

※ 주요공정계획서 별도 첨부

7) 순공사비 : 38,080,000,000원(VAT 별도)

8) 안전점검 비용 : 61,000,000원(VAT 별도)

바. 건축허가일 : 2020. 5. 15.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 1) 건축물(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3회 및 초기점검
- 2) 건설기계¹⁾ 정기안전점검 : 각 기계별 2회
- 3) 가설구조물²⁾의 정기안전점검 : 각 구조물별 2회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여수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0-1383호

나. 결정방법

-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1]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1) 천공기, 향타·향발기, 타워크레인

2)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30점	평점=평가점수 X 30%
수행가격	70점	
합 계	100점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0. 9. 11.(금) 09:00 ~ 9. 16.(수)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가격제안 최저가 : 35,500,000원 × 87.745% = 31,149,470원)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4) 서약서 1부[서식4]

6. 개찰일시 : 2020. 9. 21.(월) 이전 개별 통보(우선순위 2개 업체만 통보)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2개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0. 9. 25.(금) 14:00 ~ 16:00까지

나. 제출서류(사실확인 서류)

-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 2)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과 기존건축물 안전점검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4)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제출.

※ 사실 확인 서류는 [별첨 1]의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색지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0. 9. 30.(수) 10:00~ 17:00까지

나. 열람방법 :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종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1부
 2. 공정표 1부. 끝.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사업명		
직무분야	건축분야 [] 종합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서약서 1부 [서식4] 	수수료 없음
----------------------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자기평가서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 참여 기술인	50	소 계	50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40	소 계	4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25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15	
3. 점검·진단 평가결과	5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5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A- 이상	5	
		· BBB- 이상	4	
		· BB- 이상	3	
		· B- 이상	2	
		· CCC+ 이하	1	
		· 미제출	0	
총 계	100	평점 : 평가점수 × 30%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수행가격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제안가격	7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70점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 65점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 60점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 55점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 50점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 45점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 40점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 35점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 30점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 25점	
		· 예정가격 11번째 근접 : 20점	
		· 예정가격 12번째 근접 : 15점	
		· 예정가격 13번째 이하 근접 : 10점	

-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 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0만원
 → C기관 : 70점, A기관 : 65점, B기관 : 65점, D기관 : 60점
-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30점	평점=평가점수 X 30%
수행가격	70점	
합 계	100점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업명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공 고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모집인원 및 자격요건 등을 미리 알려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며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1. 공고기간 : 2020. 9. 4. ~ 2020. 9. 20.(17일간)
2. 인 원 : 2명
3. 자격 및 선정기준
 - 기금운용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
 - 여수시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 우선 선정
 -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참여 확대를 위하여 동일 조건인 경우 여성 우대
4. 임 기 : 2020. 10. 5. ~ 2022. 10. 4.(2년)
 - ※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5. 심의사항

- 기금운용계획안
- 기금결산보고서안
-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6. 선정방법 : 서면 심사 후 적격자 선정

7. 결과통보 : 2020년 9월 중(개별 통보)

8. 제출서류

-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

9. 접수방법 : 직접, 우편, 이메일(cccgirl@korea.kr)

(주소)우편번호 59713, 여수시 여서1로 101, 2층 도시미화과(여서동)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미화과(☎061-659-3846)로 문의 바랍니다.

이 력 서		
(사 진)	성명(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생(만 세)
등록기준지		
주 소	(도로명주소)	
년 월 일	학 력 사 항	학 교 명
. . .		
. . .		
. . .		
년 월 일	경 력 사 항	기 관 명
. . .		
. . .		
. . .		
년 월 일	포 상 및 형 별 사 항	기 관 명
. . .		
. . .		

이력서의 모든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0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인)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여 수 시 장

1. 시정명령 대상 업체: 붙임 참조
2. 시정명령일시: 2020. 9 . 4.
3. 시정명령 이행기간: 2020. 9. 4. ~ 9. 18.
4. 법 적 근 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 명령) 제3호
5. 시정명령내용: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와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 원 이상을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도급·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 기일까지 통보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만약 시정명령 기일까지 미 통보 시 과태료 처분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7.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시정명령 등의 보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 정 명 령 대 상 업 체

상 호	대표자	처분업종 (등록번호)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주)비앤비건설	양 * 천	도장공사업 (여수2019-05-01)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	시정 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

공 고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의견표명의 이행에 대하여 자체감사 면책을 적용하여 적극행정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제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 등의 이행인 경우 자체감사 면책 조항을 신설

3. 입법 예고기간 : 2020. 9. 4. ~ 9. 24.(20일간)

4.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감사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감사담당관실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감사담당관실
- E-Mail : itzwe@korea.kr
- 전 화 : 061-659-3053
- F A X : 061-659-580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

여수시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경고 등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 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이익한 처분”이란 「여수시 자체감사 규칙」상의 징계 등의 처분 및 처분요구를 말한다.
4. “공무원 등”이란 「여수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 또는 단체·개인을 말한다.

5. “경고 등 처분”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훈계(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에 적용한다.

제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본조 전부개정 2019. 8. 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은 대상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일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령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① 시장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여수시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환경복지국장, 해양수산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 17, 2013. 11. 1, 2015. 1. 15, 2019. 1. 2.)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반장은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피 감사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당해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 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담당관은 제9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시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부서)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유의사항) 이 규칙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공무원 경고 등 처분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칙에 따른 경고 등 처분대상은 감사대상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기관 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5조(처분의 효력) 기관장 경고 또는 기관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처분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법령(자치법규를 포함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 전라남도 또는 여수시의 훈령, 예규, 지시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17조(처분권자) 제14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시장이 행한다. 단,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19조(기록유지) 시장은 경고 등 처분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2009. 10. 30 규칙 제4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 관용심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2011. 1. 17 규칙 제4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의 시행은 이 규칙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복지환경국장”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하며, “관광문화수산물국장”을 “해양관광수산물국장”으로 한다.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3. 11. 1 규칙 제5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 규칙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 ⑫ (생략)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5. 1. 15 규칙 제6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환경복지국장, 해양관광수산물국장"을 "사회복지국장, 경제해양수산물국장"으로 한다.

② - ⑫ (생략)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2. 규칙 제6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을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기획재정국장, 행정안전국장, 사회복지국장, 경제해양수산물국장, 건설교통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환경복지국장, 해양수산물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 ⑥ <생략>

부칙(2019. 8. 19. 규칙 제7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p> <p>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p>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p>제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p> <p>-----</p> <p>-----</p> <p>-----</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은 대상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일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p>

도로지정 공고

여수시 오천동 368-1번지 외 1필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오천동 368-1	24	1	24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9. 4.

여 수 시 장